

## 「정비프로그램 개발지침」 일부개정안

### 1. 개정 이유

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7조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

### 2. 주요내용

가. 유효기간을 2026년 3월 31일로 연장(안 제16조)

### 3. 주요 토의 과제

없 음

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없 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첨부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184호

「정비프로그램 개발지침」 일부개정안

「정비프로그램 개발지침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 중 “2023년 3월 31일”를 ”2026년 3월 31일“로 한다.

부 칙(2023.03.31)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제16조(유효기간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<u>2023년 3월 31일</u>까지 효력을 가진다.</p>	<p>제16조(유효기간)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6</u> <u>년 3월 31일</u>----- --.</p>